

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발전방향



金 駟 舜

건강증진연구사업평가단장
연세대 의과대 교수

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욕구 증대와 만성 퇴행성질환 중심의 상병양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관리와 보건정책이 요구된다. 지금은 상병발생후 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건강관리가 아니라 건강할 때 자기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적극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대로 국가 보건정책도 이러한 국민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따라서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보건교육, 영양 및 운동지도, 금연·절주교육, 질병예방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.

이러한 건강증진사업활동은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들로서 많은 사업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,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적극적인 건강향상 및 질병예방에 목적을 두고 환자가 아닌 건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결정자나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.

상병발생후 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건강관리가 아니라, 건강할 때 자기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적극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대로 국가보건정책도 이러한 국민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다행히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사용할 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매년 약 14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.

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지원을 통한 중앙 및 지방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. 그러나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강증진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, 사업의 실시효과가 높고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기금사업은 첫째, 국민의 건강의식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와 환경여건 조성 등 1차적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질병 위험요인의 조기발견·관리를 위한 2차적 예방사업도 병행추진한다.

둘째, 지금은 사업초창기로서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 및 시책개발, 교육홍보 및 매체 개발보급, 교육훈련, 조직 및 제도정비, 자원개발, 사업개발·평가 등 연구·기술 및 행정적 지원사업에 높은 우선

순위를 두어 추진한다.

셋째, 지역주민 등 대민적인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며, 학교, 산업장, 관련기관 및 단체와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조직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활성화를 유도한다.

넷째, 사업초기에는 중앙에서의 연구개발, 기술 및 행정지원 등 일선사업의 지원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되 점차 일선의 대민사업활동에 대한 기금지원비중을 확대하도록 한다.

마지막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학생, 직장인, 군인 등 모든 국민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학교, 사업장, 군인 등 특정집단 대상의 건강증진사업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.

앞에서 언급한 기금사업의 발전방향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, 건강증진기금을 확대조성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. 